

준비 서면

신청인(선정당사자) 김 기 창(金基昌)
서울 성북구 안암 5가 xxxxx (keechang@fastmail.fm)

피신청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우)135-758,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7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담당 변호사 정진영 등)

사건 번호 **2007더978** 손해배상(기)

재판부 민사92단독(조정)

2007.3.5. 자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답변서 제3면: 피신청인은 시설, 장비 규정상에는 “공인인증기관에게 모든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 이용자들에게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하나, 그 의무는 전자서명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답변서 제4면: 시설, 장비 규정은 “비 윈도우즈 환경의 채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당연할 뿐 아니라, 윈도우즈 환경의 채택을 강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윈도우즈 환경의 채택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3. 답변서 제5면: 피신청인이 제안하는 “이용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법령에는 이를 “가입자 설비” 또는 “가입자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 답변서 제6면: 피신청인은 공인인증서의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발급, 관리

”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분하려하고 있으나, 그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설, 장비 규정 제2장, “9. 가입자 설비” 항목에 의하면, 가입자 설비는 공인인증서의 “관리” 기능 뿐 아니라, “전자서명” 기능 및 “공인인증서 검증기능”까지를 구비하는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시설, 장비 규정 9.3 참조). 답변서 제5면 각주 5에서 피신청인은 “송금정보를 모두 입력한 이후, 마지막으로 하드 디스크 등에 저장된 인증서의 목록을 보여주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는 작은 창을 띄우는 프로그램”이 “이용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단계에서 그 프로그램은 가입자의 전자서명을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즉, 가입자의 비밀번호를 읽기 위하여 인증서 암호를 가입자에게 요구하고, 정확한 암호가 입력되면, 비밀번호를 읽어 들여 그것으로 가입자의 전자서명을 생성한 다음, 가입자가 전송할 파일(송금정보 등)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가 바로 “가입자 설비”이고, 그 설비가 바로 시설, 장비 규정 9.3.2에 규정된 “전자서명 생성”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처럼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암호화 교신을 하며, 상대방(웹서버)이 제시하는 공인인증서(서버인증서)를 검증한다는 의미입니다.

5. 답변서, 제7면: 은행들의 소프트웨어가 윈도우즈 환경에만 최적화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신한은행은 매킨토시 이용자도 이용에 불편이 없고, 농협, 우체국 인터넷 뱅킹은 리눅스 이용자도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융기관들의 소프트웨어가 윈도우즈/익스플로러 위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피신청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일 뿐입니다.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생겨난 결과를 원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시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는 은행 거래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 전자민원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항목을 바꾸어 설명드리겠습니다.
6. 온라인 쇼핑몰 중에는 리눅스나 매킨토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고객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와 공공기관 웹사이트들 역시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온라인 민원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서

비스, 웹 표준 따른다”, 디지털 데일리, 2.21자 보도) 그러나, 이런 노력이 벽에 부딪히는 이유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가입자 소프트웨어”가 윈도전용으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쇼핑몰이나, 전자정부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만들어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은 공인인증기관이 최상위 인증기관(KISA)의 점검을 받고 제공하는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한 서명만을 “공인전자서명”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법적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7. 답변서 제7-8면: 은행등이 피신청인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전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 거래에 국한해서만 관찰한다면, 물론 은행은 피신청인의 이행보조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송금, 계좌이체 등의 은행 거래를 신청인들이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들이 피신청인의 등록대행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공인인증서의 발급, 관리 업무를 문제 삼는 것이고, 공인인증서의 이용은 물론,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역시 윈도 위주로만 제공되고 있으므로(신한은행, 농협은 제외), 이 부분에 대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피신청인이 져야함은 당연합니다.

8. 답변서 제9면: “각각의 운영체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인증서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최 첨단의 어려운 기술도 아닙니다. 거의 15년 가까이 존재해 온 기술이며, 덴마크의 공인인증기관, 스페인의 공인인증기관들은 대부분의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도 “Mac OS X, Windows, Linux 등 주요 운영체제를 대부분 지원”하는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이미 개발하여 공개시연도 마쳐 둔 상태입니다.

http://openweb.or.kr/?page_id=54 참조. 그리고 신한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은 현재도 리눅스, 매킨토시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면 어째서 신한은행, 우체국 등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피신청인이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9. 답변서 제10면: 리눅스나 매킨토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자에게 공인인증 업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신한은행, 농협 등의 고객

에게는 그런 운영체제를 사용해도 공인인증 역무를 제공하는 반면, 나머지 고객들에게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피신청인이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제12면: “단1명의 가입자라도 존재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거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운영체제와 모든 웹브라우저”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신청인이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피신청인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대체로 유사한 기능성(functionality)를 가지며, 대등한 제품(like product)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하여는 부당한 차별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는 세계적으로 약 3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이만큼 높지 못한 이유는 피신청인이 윈도우즈/익스플로러 전용으로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나타난 결과를 이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거듭된 시도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11. 답변서 제11-12 면: 리눅스, 매킨토시 등의 운영체제의 보안성, 신뢰성에 대한 근거없는 폄하하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사조차도 채용하지 아니하는 견해입니다.
12. 답변서 제13면: “휴대폰, PDA, TV 등 모든 통신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신청인이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피신청인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기기, 운영체제, 웹브라우저와 대체로 유사한 기기, 운영체제, 웹브라우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위법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무런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 답변서 제13-14면: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정상 작동하는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에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금융기관은 이미 주요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는 가입자 소프트웨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는지는 피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답변서 제15면: “非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이용자도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면서 그것을 “사소한 불편함”이라고 규정하고, 그를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는데, 신청인들이 그런 의사표시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바로 이러한 입장은 자신이 공인인증 서비스 시장에서 누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15. 답변서 제15면: “윈도우즈를 구입하여 오로지 공인인증서 이용 용도로만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가 얼마나 있을까도 의문”이라는 주관적 짐작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리눅스나 매킨토시 운영체제를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자가, 자기 중심적인 상상을 일반화하려는 오류에 불과합니다.
16. 답변서 제16면: 신청인들이 입은 피해는 “신청인들 스스로 여러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윈도우즈 운영체제나 비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겠다고 선택한 결과”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마치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인 것처럼 전제하고 사태를 바라보는 피신청인의 왜곡된 시각, 경쟁 제한적 사업 전략을 노출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자서명법 제7조가 공인인증기관에게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국민이 소프트웨어를 자유로이 선택하더라도 불이익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온 나라의 전산체계가 특정 회사의 소프트웨어에 종속되는 매우 위험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시장 점유율 99.9%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사태가 초래되어, 소프트웨어 산업이 초토화 되고, 국가 기간전산망의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책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신청인의 몫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7.3.7.

신청인(선정당사자) 김 기 창

서울 중앙 지방법원 귀중